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69

발의연월일: 2022. 5. 19.

발 의 자:이주환·권명호·김기현

김용판 • 박대수 • 안병길

양금희 • 이헌승 • 지성호

홍문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,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기적성, 돌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「유아교육법」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법에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.

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대유행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 공백 및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

제23조 등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298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 중 "운영하여야 한다"를 "운영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 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 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- ⑦ 학교의 장은 방과후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여 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・ 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298호 초·중등교육법	법률 제18298호 초·중등교육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 학교는	제23조(교육과정 등) ①
교육과정을 <u>운영하여야 한다</u> .	<u>운영하여야 하며, 교</u>
	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
	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
	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
	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
	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
	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
	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⑥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
	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
	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⑦ 학교의 장은 방과후 과정을
	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
	교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
	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
	다)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

제32조(기능) ① 국립·공립 학교 제32조(기능) ① ------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6. (생략) <신 설>

7. ~ 14. (생략) ②·③ (생 략)

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· 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 관 한 사항

7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